

2026 『B.Startup × Pet & Healthcare with.AI』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반려동물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와 사업유형에 따라 예비형·립스형·팁스형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AI 활용 역량 강화, 투자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2026 B.Startup × Pet & Healthcare with.AI」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4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 실행, 시장검증, 기술고도화, 투자연계가 가능한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제공
- **주최/주관** : 부산진구, 부산여자대학교, 인사이트벤처스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기간** : 2026년 6월 ~ 10월 (5개월)
- **지원내용** : 창업교육·전문가멘토링,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등

TIPS 연계 교육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 2026 창업트렌드를 비롯한 TIPS 연계를 위한 TIPS 창업교육 운영	⊕ ·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피드백 등 전문가 멘토링 제공	⊕ · 투자유치 전략 구성 등 기본 교육 · 단계별 성장전략 및 투자로드맵 수립 등	⊕ · 기업홍보, 성과공유, IR 피칭 등 진행 · 우수팀 선정을 통한 후속 투자밋업 지원

- **선정규모** : 총 8개사(예비 2개사, 립스형 4개사, 팁스형 2개사 내외)

2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26.6.4.)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26.6.4.)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초기창업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19년 6월 4일 ~ 2026년 6월 4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필히 확인)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②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④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①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거나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②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붙임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요건 검토(신청자격, 업력, 중복수혜 등)에 따른 제한 대상(기업, 예비창업자)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년 6월 ~ 10월 (5개월)

□ **지원대상** : 총 8개사 내외

구분	선정규모	주요 대상
예비형	2개사 내외	반려동물 및 헬스케어 분야 아이디어 또는 초기 창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구조와 고객검증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기업
립스형	4개사 내외	제품, 서비스, 커머스, 플랫폼 등 빠른 시장진입과 사업화 검증이 필요한 기업
팁스형	2개사 내외	기술기반 솔루션, 디바이스, 바이오, AI 등 R&D 기반 기술사업화가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 창업교육(예비·RIPS·TIPS)·전문가멘토링, 액셀러레이팅, AI 리서치 서포터즈, 데모데이 등

구분	세부내용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교육) 선정기업 공통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 · (예비형 교육) 창업 준비도 강화를 위한 교육 · (RIPS형 교육) 시장진입 및 매출화 중심 교육 · (TIPS형 교육) 후속 투자 및 연구개발 연계 역량 강화
전문가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맞춤형 1:1 멘토링 제공(3회)를 통한 투자 유치 전략 자문 등 · (네트워킹) 반려동물과 헬스케어 산업분야 관련 창업정보 공유 및 노하우 전수 등 네트워킹 진행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 기업진단을 통한 그룹 분류, 단계별 성장전략 및 투자로드맵 수립, IR 피칭 트레이닝 등
B.Startup AI 리서치 서포터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적으로 필요한 리서치 수요를 접수하고 부산여대 창업동아리 및 창업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과 연계하여 기업별 기초 분석자료 제공
데모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VC 등 연계하여 네트워킹 기회 제공 · IR 피칭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 및 후속 VC 밋업 진행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업 대상 직접 투자 검토 및 사업계획·사업화 전략 추가 컨설팅 후속 지원

4

신청 및 접수기간

- 신청 · 접수기간 : '26.6.4.(목) ~ 6.12.(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 홈페이지 (www.busanstartup.kr) 접수
 - 부산창업포털 홈페이지 가입 후 접수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작성내용	비고
1	참가신청서	필수
2	사업계획서	필수
3	신분증 사본	필수
4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 제외
5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6	매출증빙자료*	해당 시
7	가점 증빙서류 (부산권역 대학에서 창업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	해당 시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필수

* 반드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매출증빙자료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로 제출(제출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5

선정기준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⑤ 오리엔테이션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 진행(2배수 내외 선정)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창업 아이템별 심층 평가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8개사 선정	· 선정기업 8개사 대상 사업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26.6월 13일	'26.6월 14일	'26.6월 19일	'26.6월 20일	'26.6월 30일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 서류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및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구분	세부내용	점수	비고(제출서류 등)
가점 (최대 2점)	· '부산진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	1점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내용으로 확인
	· 부산권역 대학에서 창업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	1점	참여확인서 내용으로 확인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

-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진행
 - 평가시간은 15분 이내(발표 7분, 질의응답 8분)로 운영되며,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진행함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팀구성	CEO 및 핵심 인력 우수성	10
2. 시장성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성	15
	경쟁 현황 및 차별화	15
3. 기술성	개발역량, 독창성, 차별성, 경쟁우위	15
	기술개발 난이도 및 진입장벽	15
4. 사업성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15
	사업화 역량	15
최 종 점 수		100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운영일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해야 되며,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함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함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7

지원문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인사이트벤처스

- 051.710.2958 / sh@insightven.kr / link@insightven.kr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동종전환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